

국외출장보고서
독일 · 프랑스 · 벨기에 민법개정 경과 면담조사를 위한
마다가스카르 세계학술대회 참석

2024.06.02.~06.07.(출장기간)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대학(출장지)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I. 출장개요

□ 출장자 및 출장지·기간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성명	소속	직급		
김태훈	민상사법무정책 연구실	부연구위원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리보대학교	2024.06.02.~06.07. (5박 6일)

□ 출장목적

○ 독일·프랑스·벨기에 민법 개정작업 경과 및 개정 후 성과·문제점 파악

- 우리나라 민법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준 독일은 2001년 「독일 채권법현대화 법률」을 통해 민법을 대폭 개정하였고, 프랑스는 2016년에 민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함. 벨기에에는 가장 최근인 2022년에 채권법 개정을 완료함. 독일, 프랑스, 벨기에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2023년 6월에 출범한 세 번째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 정책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임. 독일과 프랑스는 우리 민법 제정 당시부터 60여 년간 민법학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참조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민법 개정작업의 경과 및 이후의 공과를 분석하는 것은 민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2016년 프랑스 민법전 개정작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프랑스 앙리카삐땅학회 집행부 및 독일과 벨기에 앙리카삐땅학회 소속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개정작업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참조하고, 이후 개정의 성과 및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법 개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임

○ 앙리카삐땅학회 회원국들과 국제학술 네트워크 구축

- 전 세계 5대륙에 걸쳐 50개국 이상의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세계앙리카삐땅학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법률가학회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바, 국제 법무정책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은 우리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확대 및 발전시키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임. 이에 올해 마다가스카르에서 개최하는 세계앙리카삐땅학회에 참여하여 회원국들과 국제학술 네트워크를 구

축함으로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비교법 연구역량 및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KICJ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IJC) 홍보

- 앙리카뻬땅학회 회원국 연구자들이 학술논문 등 연구성과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영문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IJC)을 홍보함

□ 출장일정

일정		내용	비고
6.2.(일)	01:05	인천국제공항 출발	ET673
	13:40	아디스아바바 경유 / 안타나나리보공항 도착	/ET853
	16:00	참가자접수/등록/파일인수	
6.3.(월)	09:00-09:30	등록	
	09:30-11:00	개회식	
	11:30-16:30	제1세션: 일반주제 국가별 발제·토론	
6.4.(화)	09:00-13:00	제2세션: 일반주제 국가별 발제·토론	
	14:00-17:15	아틀리에(9개 특별주제 토론) 프랑스 민법 전문가 면담	
6.5.(수)	09:00-11:00	케이스연구 독일 민법 전문가 면담	
	11:00-15:00	집행진회의/종합보고	
	15:30-16:30	폐회식	
6.6.(목)	오전	벨기에 민법 전문가 면담	
	오후	안타나나리보공항 출발 / 아디스아바바 경유	ET852
6.7.(금)	오후	인천국제공항 도착	/ET672

II. 출장내용

□ 사전 질문 사항 (Q10.은 프랑스의 예시)

Q1. 개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은 어떻게 이뤄졌나요? Comment la commission de réforme a-t-il travaillé / et été composée ?
Q2. 2016년 민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개정위원회의 목표 또는 역점을 둔 개정사항은 무엇인가요? Quels étaient les objectifs de la commission de réforme en vue de la réforme du code civil en 2016 ?
Q3. 2016년 민법 개정을 이루기까지 어떤 입법과정을 거쳤나요? *개정과정에 대한 자료 요청 Quel a été le processus qui a conduit à la réforme du code civil en 2016 ? (*Demande de données sur le processus de réforme)
Q4. 민법개정에 대한 변호사협회, 산업계 등 실무계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하였나요? Comment avez-vous pris en compte les avis des avocats, des juges, des entreprises, et etc., sur la réforme du code civil ?
Q5. 비교법적으로 민법개정에 참조한 외국민법 또는 국제모델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uels codes civils étrangers ou lois internationales étaient étudiés pour la réforme du code civil français ?
Q6. 2016년 개정 민법의 가장 큰 혁신은 무엇인가요? Quelle est la plus grande innovation du code civil révisé en 2016 ?
Q7. 민법 개정작업에서 법무부, 학계, 연구기관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이뤄졌나요? *법무부 개정위원회 관계자 소개 요청, 민법개정 관련 프랑스 대표 연구기관 소개 요청 Comment s'est opérée la répartition des rôles entre le ministère de la justice, les universités et les organismes de recherche dans le processus de réforme du code civil ? (*Demande d'introduction auprès de fonctionnaires du comité de réforme du ministère de la justice et du principal organisme de recherche français sur la réforme du code civil)
Q8. 2016년 개정 민법 시행 이후 개정작업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요? Quelle est votre évaluation/ ou évaluation en France concernant le nouveau code civil en 2016 ?
Q9. 2016년 개정 민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과 그 이후의 다른 민법 개정작업의 성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près la réforme du code civil en 2016, est-ce qu'il y a des nouveaux problèmes apparus? et des autres travaux pour la réforme du code civil ?
Q10. 유럽 내에서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민법 개정을 이룬 대표적인 예로 소비자법의 민법 편입 문제가 있는데, 프랑스는 독일과 달리 소비자법을 민법전에 편입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그 외에 약관관련법 등 시대변화에 따른 민사 특별법의 민법 편입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개정 작업을 수행하였나요? On se trouve que la France n'a pas intégré le code de la consommation dans son code civil, contrairement à l'Allemagne. Pourquoi ? est-ce qu'il y a des raisons importantes ? Quelle est une évaluation/opinion de France à ce sujet ? de plus, pensez-vous qu'il soit nécessaire d'incorporer d'autres codes dans le Code civil comme le code de la consommation ?

□ 프랑스 Philippe Dupichot(파리 1대) 교수 면담 주요사항

○ 개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016년 10월 2일 프랑스 오르도낭스를 탄생시킨 개정위원회는 총리실 내부의 위원회로, 치안 판사들과 함께 일했음. 이 위원회는 학자들이 설립한 위원회는 아니었으며, 학자들이 예비 초안을 작성했음. 2005년 피에르 까탈라와 2008년 프랑수아 페레의 예비 초안이 있었고, 2011년에는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했음. 2006년 담보법 개정 오르도낭스는 미셸 그리말디가 의장을 맡은 학계와 변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발령됨

○ 2016년 개정위원회의 목표 및 역점 개정사항

- 프랑스 민법 제정 200주년을 기념하여, 공화국 대통령 자크 시라크는 프랑스 민법전을 혁신해야 한다고 발표함. 이를 통해 계약법과 채권법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많은 학자들이 헌신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함.

○ 2016년 민법 개정의 입법과정상 특이점

- 2013년 법무부장관이었던 크리스티안 타우비라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 출신으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계약법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이때부터 계약법 오르도낭스를 준비하기 시작해, 2015년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며, 2016년 공포되기에 이룸
- 프랑스 법무부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예비 초안을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학 교수들과 변호사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예비 초안을 준비했음. 의견수렴과정에서 법조계와 전문직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답변을 주었으며, 여러 차례의 자문과 검토 과정을 거침

○ 비교법적 참조

- 한국, 독일, 일본, 칠레, 콜롬비아 민법도 참조하였으며, 특히 유럽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음. 외국법의 참조과정에서 프랑스 민법의 전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음

○ 2016년 개정 민법의 가장 큰 혁신

- 두 가지 주요 혁신이 있었는데, 첫째는 판례를 통합하여 법률이 더 읽기 쉽고 접근하기 쉬워진 점, 둘째는 계약법 개정에 자유, 계약의 확실성, 신의성실이 라는 세 가지 철학이 반영된 것임

○ 법무부·학계·연구기관의 역할분담

- 법무부, 학계, 연구기관 간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졌음. 총리실과 법학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개혁 작업을 이끌었으며, 자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음

○ 개정작업에 대한 평가

- 전반적으로 개혁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됨. 법률이 더 명확하고 접근 가능해졌으며, 분쟁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법률 체계가 구축되었음

○ 2016년 개정 민법 시행 이후 문제점과 이후의 성과

- 일부 정치적 이슈로 인해 민사 책임에 대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며, 계약 각칙에 대한 개혁은 아직 진행 중인데, 책임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쟁점으로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임.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소비자법의 민법전 편입 문제의 처리와 민사특별법의 민법전 편입기준

- 프랑스 민법은 일반법에 관한 것이며, 소비자 보호와 같은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통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법전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민법의 주요 원칙을 유지하고 있음



[사진1] 디피쇼 교수 인터뷰 사진



[사진2] 디피쇼 교수와 기념 촬영 사진

□ 독일 Gerald Mäsch 교수(뮌스터대) 면담 주요사항

○ 개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법무부장관이 14명의 위원을 선택하였고 모두 교수로 구성되었음. 개정위원회 위원장인 롤랜드 역시 교수였으며, 그는 동독과 통일이 된 후 법무부 공무원 출신으로 교수가 되었지만 관료와 학자의 중간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음. 그는 장관의 신뢰를 받았지만 동시에 개정위원회 위원과 동등했고, 위원 모두가 교수로 구성되었다는 데 특징이 있음

○ 2002년 개정위원회의 목표 또는 역점 개정사항

- 가장 큰 목표는 유럽지침을 따라 국내법을 변경하는 것이었음. 이를 바탕으로 의무불이행과 불완전이행과 관련된 법률규정을 현대화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음. 세 번째 목표는 소비자법과 관련된 규정을 민법에 통합하는 것이었음. 네 번째 목표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었음

○ 2002년 민법 개정의 입법과정

- 이미 80년대와 90년대에 개혁 프로젝트가 있었고, 당시 출판된 많은 자료를 기반으로 새로운 개정위원회는 작업을 수행했음. 따라서 짧은 시간 안에 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법무부 공무원들이 법안을 만들었고, 법안에는 상세한 설명서가 첨부되었음.
- 국회의원들은 모두 법률가가 아니었으므로 민법 개정에 관심이 있었고, 민법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선거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당시 법무부장관이 개혁 프로젝트의 성공에 무게를 두고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함

○ 민법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 국회에서 전문가, 기업 대표, 소비자 대표, 변호사, 판사 대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의견 토론을 거침. 법안이 발표되었을 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는데,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필요는 없지만 반대가 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었는데, 특히 교수들 사이에서 개정에 대한 반

대가 더 강했음

○ **비교법적 참조**

- 유엔국제물품매매법(CISG)에서 계약상 의무위반에 관한 개념을 참고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구제수단들을 현대적으로 마련함

○ **2002년 개정 민법의 최대 혁신**

- 첫째는 의무위반과과 불완전이행 관련 민법규정의 현대화였음. 둘째는 소비자법 규정을 민법에 통합한 것이며, 셋째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임. 예를 들어, 종전의 소멸시효는 30년이었으나, 이를 3년으로 단축했고,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책임은 배송 후 2년으로 설정함

○ **법무부·학계·연구기관의 역할분담**

- 법무부 공무원들이 법안을 작성하는 데 주요 역할을 했고, 교수들이 자문 역할을 했음. 개정위원회는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법무부 공무원들이 법안을 만들고 상세한 설명서를 첨부하였음

○ **개정작업에 대한 평가**

- 전반적으로 개혁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됨. 개혁 이후 민법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법이 더 명확해지고 접근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2002년 개정 민법 시행 이후 문제점과 이후의 성과**

- 일부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으나, 그 수와 중요성은 적었음. 연방법원이 지난 20년 동안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왔음. 예를 들어, 거래한 물품이 늦게 배송되거나 부적합한 제품이 배송된 경우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었음

○ **소비자법의 민법전 편입 문제의 처리와 민사특별법의 민법전 편입기준**

- 독일은 소비자법 규정을 민법에 통합하였으며, 이는 계약법이나 민법 전반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소비자법을 민법에 통합함으로써 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었음. 약관관련법 등 시대변화에 따른 민사특별법도 민법에 통합하여 법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사진3, 4] 메쉬 교수 인터뷰 사진

[사진5] 메쉬 교수와 기념 촬영 사진

□ 벨기에 Vincent Sagaert 교수(루벤대) 면담 주요사항

○ 개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법무부장관이 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했음. 위원회는 총괄 조정자 두 명(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 학자)과 5개의 전문가위원회(재산, 증거, 계약 및 채무, 계약 외책임, 담보)로 구성되었음. 주요 구성원은 주로 학자였지만, 치안판사나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도 포함되었음. 벨기에의 이념, 종교, 언어적 다양성을 반영하여 균형 잡힌 구성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았음

○ 개정위원회의 목표 및 역점 개정사항

- 2022년 개정의 주요 목표는 유럽연합 지침을 반영하여 계약불이행과 불완전이행 관련 법률을 현대화하는 것이었음. 또한 소비자법을 민법에 통합하고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였음

○ 민법 개정의 입법과정

- 위원회는 유럽내 입법자들의 방식처럼 백서와 그린 페이퍼¹⁾를 만들어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했음. 벨기에에서 민법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300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받아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이 있었음
-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민법이 굉장히 기술적인 법으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 토론이 이뤄지기 쉽지 않았고, 오히려 교수, 공무원 등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공론화 과정이 방어적이지 않고 효과적이었음
- 1900년에 이미 민법을 개정하려는 첫 시도가 있었으나 결실을 초안을 작성했지만 개정의 결실을 맺지는 못했고, 2016년 교수 출신의 쿤 게인스가 법무부장관이 되면서 사법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민법 개혁 프로젝트를 카리스마 있게 추진했고 마침내 4년 후 개정의 결실을 이루었음

1) 그린 페이퍼(Green Paper)는 특정 문제에 대해 연합 수준에서 본격적인 협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위원회가 발행하는 문서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린 페이퍼는 모든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켜 특정 주제에 대한 공중의 토론과 논의를 목표로 하며, 공개된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칠 때까지 최종결정을 유보한다. 일부 경우에는 백서(white paper)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연방 국가들, 홍콩, 미국에서 공개된 토론과 논의를 위한 정책 제안의 잠정적인 정부 보고서이자 협의용 문서의 기능을 갖는다.
<https://www.lexisnexis.co.uk/legal/glossary/green-paper>

○ 민법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 벨기에에서 민법 개혁에 그린 페이지를 이용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은 처음이었는데, 민법은 사적인 관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법 개정안과 관련해 300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받으면서 공증인 대표, 기업 연구소 등의 의견은 물론 반대의견도 수렴하였음. 공론화 과정을 기반으로 민법을 개혁하고 개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었음

○ 비교법적 참조

- 벨기에는 네덜란드, 프랑스, 퀘벡, 독일 민법을 주요 참고 대상으로 삼았음. 이들 법제도를 바탕으로 조항을 비교하고 유사하거나 상반되는 조항을 모아 논의했음. 특히 프랑스 민법과 네덜란드 민법이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음

○ 2022년 개정 민법의 최대 혁신

- 채권관계에 관한 제5권이 일반적인 의무법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개정될 수 있었고 개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예측불가능성의 도입과 같이 판례와 학계의 견해를 민법에 반영한 것임

○ 법무부·학계·연구기관의 역할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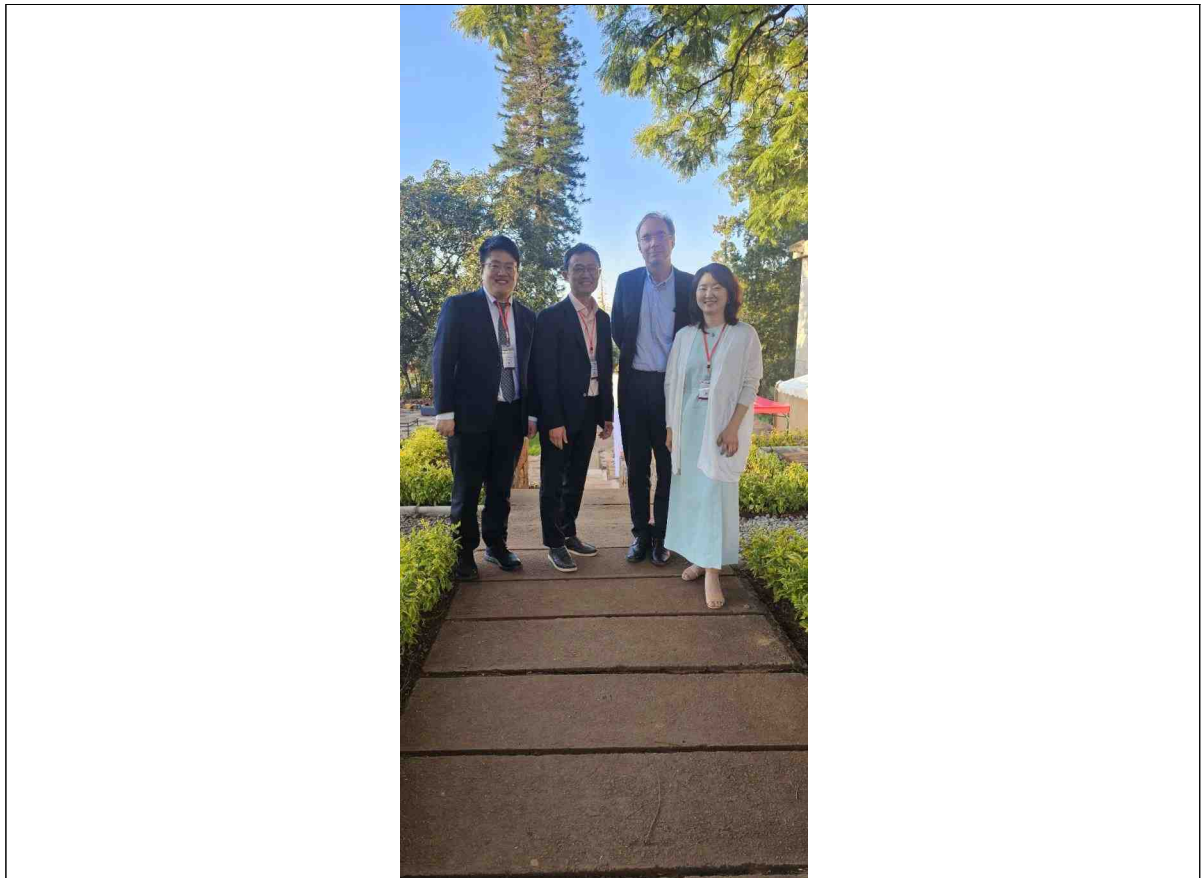
- 법무부장관에 의해 개정위원회가 구성되고, 학자 및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내의 구성적·질적 측면의 다양성 확보를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 직업, 언어, 성별, 종교의 대표성을 가지는 자들이 협업하도록 함

○ 개정작업에 대한 평가 및 개정 이후 문제점과 성과

- 아직 법원 판례가 축적되지 않아 시기상조이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적 민감성으로 인한 특수계약,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등 특정부문의 개정이 지연된 것을 제외하고 법무부장관의 추진력을 통해 상당한 개정작업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봄

○ 소비자법의 민법전 편입 문제의 처리와 민사특별법의 민법전 편입기준

- 벨기에는 소비자법을 민법에 통합함으로써 유럽연합 소비자매매지침의 규칙은 민법상 매매법의 일반적 기초를 형성하게 되었고, 민사특별법의 민법전 편입과 관련해 유럽연합법과의 조화를 지향함



[사진6] 병성 교수 기념 촬영 사진

□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영문저널 홍보

○ KICJ 소개 및 국제연구 네트워크 형성

- 올해 마다가스카르 세계안리까뻬땅학회에 참석한 프랑스, 독일, 벨기에는 물론 캐나다, 터키, 칠레 등 연구자들과 소통하면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한국 내 위상과 역할 등을 소개하고 향후 다양한 법무정책의 비교법적 연구추진

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함

○ KICJ 영문저널 홍보

- 앙리카뻬땅학회 회원국 연구자들에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및 영문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IJCJ)을 홍보하여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이 다양한 주제의 연구성과들을 투고할 수 있도록 안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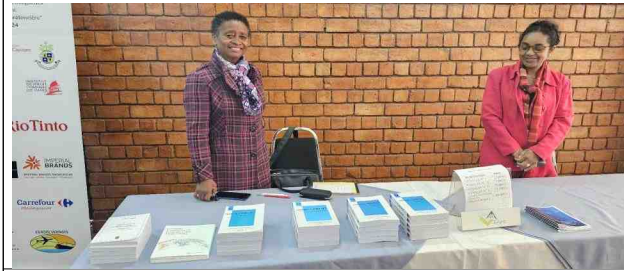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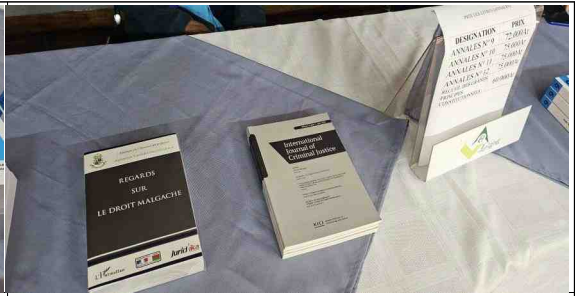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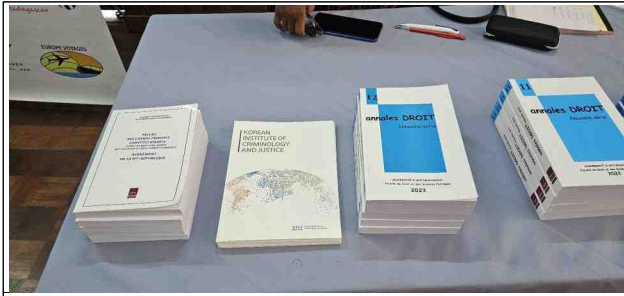
[사진7] 단체 기념 촬영 사진



[사진8] 단체 기념 촬영 사진



[사진9] 독일 니엘 페터슨 부회장과 기념 촬영 사진



[사진10·11] KICJ 홍보 사진

[사진12·13] IJC 홍보 사진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독일·프랑스·벨기에 민법 개정경과의 비교검토를 통한 우리 민법 개정작업에의 참조사항 도출

- 2002년부터 가장 최근에 이르기까지 민법개정에 성공한 주요 국가의 민법개정 전개과정을 각국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실제적·입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개정과정의 공통점 및 이동에 대한 자연스러운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 민법 개정작업의 성공을 위해 유효적절한 참조점을 도출할 수 있었음
- **개정준비의 성숙과 추진동력의 창출 필요성** - 각국이 민법개정에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추진동력의 창출은 법무부 주도, 제정 200주년 계기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개별 국가의 입법상황과 우연한 시기의 일치가 작용한 측면이 있고, 민법개정이 현안의 시급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민법의 현대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부처 또는 헌법기관의 추진의지가 핵심적으로 작용하였음. 더불어 이러한 추진의지가 개정작업의 성공이라는 결실로 실효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방대한 민법의 개정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의 연구가 성숙해 있을 때 이를 토대로 개정에 대한 추진의지가 더해져 상대적으로 단기간의 입법절차를 통해 개정완수에 이를 수 있었음
- **개정 전 과정에 걸친 사회 각계각층의 개정작업 참여** - 각국이 민법개정에 이르는 개정절차상 다소간의 이동(異同)에도 불구하고 개정작업의 착수단계에서 완수에 이르는 전 과정에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폭넓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수차례 거침. 이렇게 대화와 설득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견지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일반사법으로서 민법의 생활규범력을 확보하는 한편, 여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한 것은 법무부 주도의 학자 내지 소수의 실무자로 구성된 개정위원회에 의해 거의 전유된 채로 추진되어 온 우리 민법개정 작업에 유의미한 변화를 촉구함
- **비교법을 통한 글로벌스탠더드의 공유와 각국에 상황화된 입법적 결단의 교차** - 각국이 민법의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비교법적 연구를 디폴트로 수행하여 포괄적 계약불이행과 불완전이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등 글로벌스탠더드를 개정 민법에 공유함. 한편 소비자법을 민법에 통합하도록 지시하는 유럽연합 지침의 이행과 관련해 사회변화의 반영 및 규범의 체계정합성 사이

에서 각국 민법에 대한 개별적 고려를 통해 고유한 입법적 결단을 병행함

○ 특이사항

- 독일의 경우 법무부를 중심으로 하는 민법 개정과정에서 초기 교수들을 중심으로 개정 반대하는 견해가 율등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면담한 전문가의 사견에 따르면 민법전과 현실 간의 괴리를 오랜기간 축적된 규정에 대한 해석론으로 보완하고 있고 풍부한 해석론이 독일 민법학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변화에 수긍하지 않았다고 함. 이 때문에 법무부가 교수 그룹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투하하였다고 함. 이러한 경향은 종래 민법전에 대한 독점적인 해석권한을 행사하던 법률가들이 이를 유지하여 당대의 안일을 추구하는 반면 국민의 일반사법으로서 민법전의 규범력을 회복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등한히 한 것이며 우리 사회에서도 경계해야 할 것임
- 프랑스의 경우 민법전 개정의 시점에 국회에서 행정부에 입법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수권명령에 의한 입법비율이 증가하다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러한 추세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함. 이후 실질적 의회주의에 반한다는 자성론이 대두되어 다시 이러한 입법행위가 감소하고 있다고 함
- 벨기에의 경우 개정작업의 조속한 실현을 통해 벨기에 민법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수립하였다고 함. 이러한 배경에는 과거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프랑스민법전이 개혁 작업의 지연으로 그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가 작용하였으며, 채권법은 특히 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음